

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5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04. 13(월)
제 출 자 : 박찬원 대표의원
찬 성 자 : 이범연, 함명섭,
박종욱, 장문혁
임영순 의원

1. 주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5년 04월 20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심사계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
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조례안 심사
 - 가. 평창군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
 - 나.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 - 다.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 - 라.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
 - 마.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 - 바.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 - 사.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3. 활동기간

- 2015년 04월 20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성

- 이범연 의원, 함명섭 의원, 박종욱 의원, 장문혁의원, 임영순 의원, 박찬원 의원

5. 운영계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고
2015. 04.20 (월)	제1차 조례특위 (13:30)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조례안 심사 가. 평창군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.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.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라.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마.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.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.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